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공고 제2026 -16 호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기간제근로자(직업상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직업상담원 대체인력)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3월 10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Ⅰ 채용분야

○ 공무직근로자(직업상담원)의 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

Ⅱ 근로조건

근무 예정지	채용 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보수	비고
평택 고용센터	1명	'26. 3. 30. ~ '27. 1. 31.	월~금(09:00~18:00) 1일 8시간(주 40시간) 1일 1시간	기본급 2,096,270원 정액급식비 160,000원 (기타 법정수당 별도)	휴직 대체인력

※ 단, 대체 대상 근무자의 휴직이 조기 종료될 경우 30일 전에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체 대상자가 휴직을 연장할 경우 합의 하에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업무 내용: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4조에서 정한 업무 등
○ 보수 수준: 기본급 2,096,270원,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그 밖의 법정수당 별도(4대보험 가입)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Ⅲ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성별·연령	· 무관
학력·전공	· 무관
기타	**· 채용 관련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타 유의사항 참조)**

Ⅳ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응시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 심사 ▲서류심사 결과, 근무희망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

○ 전형 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원서접수	**'26.3.10.(화) ~'26.3.18.(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동의서, 자격증 및 증명서 사본 제출(해당자)**(Ⅴ. 접수서류 참조)** • 평택지청 **채용담당자 e-메일(cleanskystar@korea.kr)로만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서류 합격자 발표	**'26.3.20.(금)**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공고(별도 안내 문자 발송)
면접전형	**'26.3.24.(화)**	• 신분증 지참
최종 합격자 발표	**'26.3.26.(목)**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 후 계약만료일 전에 조기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 결원의 잔여 근무 기간만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Ⅴ 서류접수

○ 아래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 후(서명 필수) **스캔본을 e-메일(cleanskystar@korea.kr)로 송부**

※ e-메일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 서류	비고
필수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서식1]** • **채용결격사유 관련 확인서** 각 1부 **[서식2, 서식3] → 최종합격시 제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4]**	
선택	•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직업상담 관련 교육(관련 교과목 또는 직업교육훈련) 이수 증명서류 각 1부**(해당자)**	
	• 가점부여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Ⅵ 우대사항

<table>
<tr><th>구 분</th><th>우대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th></tr>
<tr><td>경력사항
<서류전형></td><td>• 공공·민간기관의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자</td></tr>
<tr><td>자격사항
<서류전형></td><td>•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td></tr>
<tr><td>가점부여
<서류 및 면접전형></td><td>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부가 점수</th></tr>
<tr><td>사회형평가점</td><td>▲「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td><td>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td></tr>
</table>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사회형평 가점 포함시)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채용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 순으로 선발함
① 법정 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 ② 사회형평 가점을 받은 자 ③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준고령자순 ④ 서류 및 면접 전형 합산점수가 높은 자

※ 법정 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부가 점수</th></tr>
<tr><td>법정가점</td><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td><td>없음

*최종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 발생하는 경우 법정가점 대상자 우선 선발</td></tr>
</table>
</td></tr>
</table>

* 우대사항 적용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Ⅶ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 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 대상에서 제외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초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지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지역협력과 ☎ 031-646-1134

붙임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직무설명자료 : 기간제근로자(직업상담원)

채용분야	**직업 상담원**	**분류 체계**	대분류	07. 사회복지·종교		
			중분류	02. 상담		
			소분류	01. 직업상담서비스		
			세분류	01. 직업상담	02. 취업알선	■ 고용보험 수급지원 (세분류 자체개발)

기관 주요사업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고용보험 운영, 취업지원, 근로감독, 산업안전 등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주요업무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관리 ○ 직업정보관리 ○ 직업심리검사 ○ 직업훈련 상담 ○ 고용보험 수급지원
주요업무 수행내용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관리)** 구직자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을 분석하고, 구직활동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구인업체 정보수집과 구인정보 구축을 위한 정보관리 및 맞춤 알선을 위한 잡서칭과 매칭 업무 수행. ○ **(직업심리검사)** 내담자의 직업심리검사를 위한 검사도구 선택 및 실시. 직업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결과에 대한 내담자와의 상담업무 수행. ○ **(직업정보관리 및 직업훈련 상담)** 각종 수집된 직업정보의 분석과 내담자 특성별 정보 가공 및 제공, 가공된 직업정보 축적을 위한 업무 수행. 직업훈련 정보 분석을 통한 직업훈련 맞춤 정보 제공. 지원제도 등 구직자 특성에 부합한 안내 및 상담업무 수행. ○ **(고용보험 수급지원)** 고용보험 관련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등 지급 지원업무 수행. 취업지원설명회 교육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전형

일반요건	연령	공고문 참조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필요지식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관리)**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동향, 직업상담서비스 관련 법률, 직종별 구인구직정보 시스템, 고용정보 수집방법 및 동향에 대한 이해, 지역 내 직종별 고용현황, 해당직무 및 자격에 대한 이해 ○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이론, 직업심리검사도구 유형과 도구별 해석에 대한 지식, 대상별 내담자 특성, 의사결정론, 라포(Rapport)형성 이론 ○ **(직업정보관리 및 직업훈련 상담)** 직무분석,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임금 및 근로조건, 의사결정론, 직업정보 관계법, 직업심리학, 직업상담심리학,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국가기술자격·전문자격 실시현황 및 과정별 특징 ○ **(고용보험 수급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준 및 지원 정책

필요기술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관리)** 내담자 구직요구도 분석능력, 취업상담능력, 구인구직 정보 탐색 및 분석 능력, 고용관련 법률 해석능력, 다양한 구인구직정보 발굴 및 데이터 수집 능력, 직업심리검사 활용 능력 ○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도구 실시능력, 직업심리검사 해석능력, 직업심리검사결과 판정능력, 내담자 검사 시 대응능력 ○ **(직업정보관리 및 직업훈련 상담)** 직무분석기법, 매체별 특성에 따른 직업정보 확인 및 가공 능력, 의사결정기법, 직업정보 분석 및 제공·관리 능력,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검색 및 분석능력, 국가기술자격·전문자격 검색 및 분석능력, 구직자의 훈련과정 결정에 대한 조력 능력 ○ **(고용보험 수급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기준에 따른 정보제공 및 지원 능력
직무수행태도	○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태도, 주의 깊은 관찰과 경청의 자세, 내담자를 향한 개방적 태도와 배려심, 업무에 대한 사명감, 구인구직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노력, 변화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 정보관리에 대한 정확성
필요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 www.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증빙이 가능한 부분만 기재**하고 공란 등으로 정확한 내용이 **확인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 되며 **증빙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무 관련 경험 또는 경력 사항의 **근무활동 기간은** YYYY/MM/DD ~ YYYY/MM/DD 형식으로 **일자까지 기재**하고 해당 연도 또는 월만 기재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4.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비대상' 또는 '아니오'에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자기소개서에서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됩니다.
6.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NCS기반 입사지원서

지원분야	기간제근로자(직업상담원 대체인력)
지원유형	☑ 평택고용센터

※ 지원유형 선택 불가

1. 인적 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성 명		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 여부	□이상 □미만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법정가점 대상자 여부	□대상 (□5%, □10%) □비대상	사회형평 가점대상여부	□대상(3%) □비대상

2. 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 사항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고 경험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경험에는 팀 프로젝트 활동, 연구회 활동, 동아리/동호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봉사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직업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 기입해 하고 기타 사항을 추가로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활동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3. 직무 관련 자격 사항

○ 직무관련 자격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YYYY/MM/DD
		YYYY/MM/DD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공통)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험 혹은 경력사항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경험 혹은 경력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

자 기 소 개 서(공통)

1. [공정성과 중립성] 공정성과 중립의 자세를 갖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2. [업무 정확성]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꼼꼼한 자세로 수행하고, 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3. [의사소통능력] 갈등이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하여 상황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4. [규정준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5.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장점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귀하**

서식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용노동부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귀하

서식3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 3. 29. 제14145호로) 시행('16. 9. 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서식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구 분	수 집 정 보
입사지원자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 ○ 직무 관련 경험·경력·자격 사항 ○ 자기 소개서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확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수집·이용목적)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 결격사유 확인**
○ (수집항목) **입사지원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위 입사지원자 수집정보)
○ (보유·이용기간) 신규 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 . .

성명 (서명)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귀하

서식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